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4.27(목) 15:00부터 보도 가능	배포	
책임자	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 박 주 영(02-2100-2630)	담당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사무관 박 경 덕(02-2100-2637)	

제 목 :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

- ① (사전 정보제공 강화) 금융상품 비교공시,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,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고합니다.
- ② (판매행위 규제)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·체계화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.
- ③ (사후구제 강화)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,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·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I 추진 경과

- '17.4.27일 차관회의에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이 통과되었음
 - '동일기능 - 동일규제'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'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'를 구축하기 위해 '16.6월 입법예고안'을 발표한 바 있으며,
 - 이후 의견수렴, 규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

II 주요 내용

1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

◇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'동일기능 - 동일규제' 원칙 하에 재분류·체계화하여 규제 사각지대 방지

- ① (금융상품)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“예금성·투자성·보장성·대출성” 상품으로 재분류(\$3)

구 분	개 념	대 상(예시)
예금성	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예·적금 등
투자성	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펀드 등 금융투자상품, 신탁상품
보장성	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보험상품 등
대출성	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대출상품, 신용카드 등

- ② (금융상품판매업자등)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“직접판매업자(금융회사), 판매 대리·중개업자, 자문업자”로 재분류(\$4·11)

- 기존의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,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

구 분	개 념	대 상(예시)
직접 판매업자	대리·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	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
판매대리·중개업자	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	투자권유대행인, 보험설계·중개사, 보험대리점, 카드·대출모집인 등
자문업자	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	투자자문업자

2 | 사전 정보제공 강화

◇ **상품 비교공시, 종합적 자문서비스,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, 불완전판매 예방**

① **(판매수수료 공개 등) 금융상품 비교공시* 및 판매수수료 표기****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 (§25·36)

*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·체계적 관리

** 모집인 등 판매업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높고 소비자는 판매업자의 유인구조를 알 수 없어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

② **(금융상품자문업 신설)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·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** (§26)

○ **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*** 등을 규정하고,

* 독립 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,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,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

○ 판매업자로부터 **“독립”된 자문업자의 경우,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**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

③ **(금융교육 강화)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,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** (§34·35)

○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**금융교육협의회***의 법적근거 마련

* (구성) 금융위 부위원장(의장), 관계부처 고위공무원, 금감원 부원장 등 (역할) 금융교육 추진·평가·제도개선 사항을 심의·의결

○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,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

3 | 판매행위 규제 강화

◇ **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중심으로 판매 행위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**

① **(6대 판매행위 원칙)**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(§16~21)

○ 특히,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·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

구 분	내 용	대상 상품
①적합성 원칙	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	모든 유형
②적정성 원칙	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및 확인의무 부여	대출성·투자성·보장성 상품
③설명 의무	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	모든 유형
④불공정영업행위금지	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 강요, 부당한 담보요구, 부당한 편익요구 등 금지	대출성상품 등
⑤부당권유금지	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	모든 유형
⑥광고규제	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/ 금지행위 규제	모든 유형

② **(판매제한 명령권)**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 (§54)

○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

③ **(징벌적 과징금)** 판매행위규제 위반*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%까지 과징금 부과 (§62)

* 설명의무 (§18)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(§19), 부당권유행위 금지 (§20), 광고규제 (§21) 등

4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사전 예방

◇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,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

- ① **(청약철회권)**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“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” 기회 부여
- 보장성·대출성·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(\$51)

구 분	유형별 숙려 기간(예시)
보장성 상품	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
투자성 상품·금융상품 자문	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
대출성 상품	계약서류 제공일,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·재화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

- ② **(위법계약 해지권)**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*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,
- *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
 -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(\$52)
- ③ **(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)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* 사유시 예외적 허용(\$19)**
- * 다른 법령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
 -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므로 제한 필요

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

◇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,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,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

- ① **(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)**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(\$27)
- *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
 -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·유지·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·청취 요구시,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
 - * 다만, 금융회사는 영업비밀 현저 침해 등의 경우 거절, 제한 가능
- ② **(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)**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*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
- *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→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
 -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(\$45)
 -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(\$46)
- ③ **(소송수행 부담완화)**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전환,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여 용이한 소송수행 지원
-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의·과실*, 손해액** 등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부담 완화(\$48·50)
 - *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 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
 - ** 투자성 상품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
 - 판매 대리·중개업자에 대해 직판업자(금융회사)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되, 일정한 경우 직판업자의 책임면제*(\$49)
 - * 직판업자가 판매 대리·중개업자의 선임·감독시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손해방지 노력까지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 면책 가능

6 금융소비자 보호 행정체계 정비

◇ '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- 금융위 - 금감원 - 금융회사'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

- ① (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)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,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* 설치(§30~33)
* 구성 : 금융위원장(위원장)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, 금감원장 등
- ② (종합계획 등)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(3년),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역량 조사 등의 의무 부여(§28·29·34)
- ③ (소비자실태평가)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그 평가결과의 공표절차를 제도화(§36)
- ④ (소비자보호기준)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수립의무 부여(§36)

III 향후 계획
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은 '17.5.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국회 제출
- 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제정작업 추진